

특 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19. 9.

특 허 청
(특허심사기 획 과)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특허법 시행령 상의 전문기관 등록기준 보완을 추진 중이며, 이를 반영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전문기관 등록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에 대한 현황도 포함(안 제36조의2 및 별지제60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

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“임직원의”를 “임직원 및 지분(주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가진 자의”로, “임직원 현황”을 “임직원 및 지분을 가진 자 현황”으로 한다.

별지제6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